

의안번호	2217447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6.6.17.
추계번호	26D14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7조의4 (삼성혈 역사문 화유산의 계승· 발전 등)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 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7조의4(삼성혈 역사문 화유산의 계승·발전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탐라 개국 신화인 삼성혈(三姓穴)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국가유산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동법 제52조¹⁾에 근거하여 국가지정유산의

1)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보존·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지정 사적 「제주 삼성혈」 및 그 소유단체인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에 지원하고 있음

[참고] 제주 삼성혈 관련 지원사업 현황: 2024~2026년

연도	사업명	비목	예산(백만원)
2024	제주 삼성혈 재선충방제 및 노거수 보호사업	시설비	150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시설비	50
	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
	합 계		230
2025	제주 삼성혈 재선충방제 및 노거수 보호사업	시설비	150
	제주 삼성혈(송보당)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40
	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
	합 계		222
2026	제주 삼성혈 재선충방제 및 노거수 보호사업	시설비	150
	제주 삼성혈(송보당) 정비사업	시설비	530
	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9
	합 계		70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 개정안은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범위,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세금 감면 등은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 또한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